

서울 행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09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및재심의청구의 소
 원 고 전민정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대표자 위원장 강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제기한 2019. 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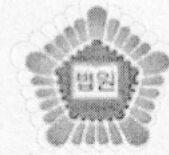
1. 피고의 권고 의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경위

가. 한국방송공사는 2019. 3. 16. 20:00부터 21:00까지 1TV 채널을 통하여 "도올아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22. 전화로 피고에게 "위 프로그램의 출연자 김용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망언을 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결정을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평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제27조 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구 방송법(2019. 12. 10. 법률 제1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국방송공사에 권고(이하 '이 사건 권고'라 한다)할 것을 의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권고 의결 사실을 민원처리결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재심의를 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음에도, 피고가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제27조 제5호만을 적용하여 권고를 의결하고 재심의 요청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각한 것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권고결정 및 이 사건 회신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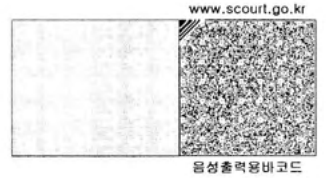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회신을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재심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권고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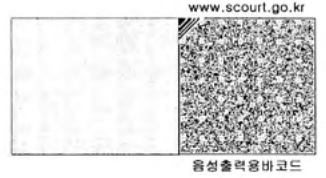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권고가 경미한 처분으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이익이 되고 원고와 같은 시청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복효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 명령이나 권고, 의견제시 등을 규정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등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원고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권고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회신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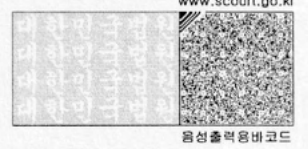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처리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법 제100조 제7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조치 명령의 수범자 등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시청자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제재조치 등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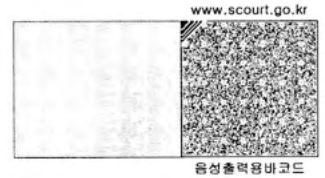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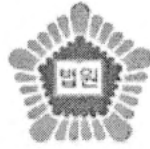
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u>이정민</u>	
	판사	임윤한	<u>임윤한</u>	
	판사	차선영	<u>차선영</u>	





별지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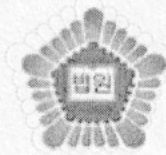
제25조(제재조치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구 방송법(2019. 12. 10. 법률 제1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제재조치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013.3.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정본입니다.

2020. 9. 3.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신종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